

청렴 옴부즈만 운영기준

제정 2010. 04. 09.

개정 2010. 11. 08.

개정 2012. 04. 1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산업진흥원”이라 함)의 주요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민·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청렴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청렴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역할) ①청렴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개정 2012.4.10.)

1. 주요업무 및 사업과정의 투명성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2. 부패 취약분야의 관련제도에 대한 개선사항 발굴
 3.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청렴 관련 교육 및 자문
 4. 기타 진흥원의 청렴성 확보를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청렴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면서 위법·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원장에게 시정 또는 감사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4조(구성 및 운영) ①옴부즈만은 5인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11.8.)

1. 경영·행정·회계·법학 및 소프트웨어·정보통신학 관련 전공자로서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등 지식산업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2.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자
 3. 그 밖에 도덕성, 청렴성이 높고 전문성이 있는 외부전문가
- ②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활동하되, 전원이 모여서 협의 및 결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청렴 옴부즈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③윤리경영 총괄담당 부서장(이하 “윤리경영부서장”이라 한다)은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등을 지원한다.

제5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2.4.10.)

②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4.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기타 성과가 미흡하여 기관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

제6조(제척 · 회피 · 기피) ①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활동에서 제척된다.

1. 당해 모니터링 대상사업 및 분야와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모니터링 대상업무와 관련된 업체 등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체 또는 협회의 임원으로 활동 중인 경우

②옴부즈만은 특별한 활동과 관련하여 공정한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윤리경영부서장에게 회피 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3. 공공사업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의 임직원

제8조(여비 등) 옴부즈만 회의, 현장 활동, 등 관련 업무에 참석한 옴부즈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가 수당지급 지침에 따른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타) ①원장은 대내외 여건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윤리경영부서장은 이 기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세부기준 및 방안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척(2010. 4. 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척(2010. 11. 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척(2012. 4. 1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